

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계획

1 '26년도 평가계획 개요

1. 평가 개요

- ☐ (평가 의의)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
 - 각 기관의 사업운영 결과인 취업성과(양·질)를 매년 1회 평가하여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위탁사업 선정심사에 반영
- ☐ (평가 방향) 참여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더 나은 일자리에 더 많은 참여자를 더 빨리 취업시킬수록 높은 점수를 득점
 - '25년 평가와 동일하게 취업자 수(규모지표)를 평가에 반영하여 취업자 수가 많은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되
 -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경험 등 타 사업 연계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
- ☐ (평가 대상) '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본사업 민간위탁 약정을 체결한 민간위탁기관
 - (컨소시엄) 해당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모든 기관의 실적을 합산
 - * 컨소시엄 기관 중 하나의 구성기관이 '26년 사업 운영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, 해당 구성기관의 실적을 전부 제외하고 심사
 - ↳ 사업을 중도 포기한 구성기관은 2년 범위 내에서 위탁사업 참여 제한 가능
 - ** '27년에 분리되는 경우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결과를 각 구성기관에 대해 그대로 유지('26년 평가결과 B등급인 컨소시엄 → '27년 (가), (나)기관으로 분리 시 각각 B등급)
- ☐ (평가 권역) 전국 단일권역으로 평가
 - 단, 취업처 임금수준 지표는 지역별 임금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8개 대표(지)청* 권역별로 상대평가
 - * 서울, 중부(인천), 경기, 강원, 대구(경북), 부산(경남, 울산), 광주(전라, 제주), 대전(충청, 세종)

- ☐ (평가 범위) '25.11.1. ~ '26.10.31. 기간 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에 대한 취업지원 성과를 측정
- ☐ (평가 방식) 일자리 성과에 따라 상대평가
 - 4개 등급으로 배분하고, 등급별 배정비율은 A 20%, B 40%, C 25%, D 15%('25년과 동일)

2. 평가결과 활용

- ☐ (정보 공개) 참여자가 민간위탁기관 선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평가등급, 취업실적 등 정보 공개
 - *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→ 운영기관 찾기)에 공개
- ☐ (차년도 선정 반영) 평가등급을 '27년 선정심사 기준에 반영하고, 평가등급에 따라 참여 제한
 - ① (선정심사) '27년 선정심사 시 '26년 평가등급을 통해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하고, A, B등급 기관은 추가 가산점 부여
 - '24~'26년 연속 A등급 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'27년 우선선발 가능
 - ② (참여제한) 2년 연속 평가등급 D등급 기관은 '27년도 참여 제한

3. 평가 운영계획

- ☐ '26년 성과평가 계획 설명회(3월 예정)
- ☐ '26년 성과 데이터 사전 점검(6~10월, 총 2회*)
 - * (1차) 6월 마감 데이터 → 7월 공개, (2차) 8월 마감 데이터 → 9월 공개
- 6월 말, 8월 말 기준 실적 데이터를 공개하여 일자리 성과의 평가 데이터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, 산출점수* 일부 공개
 - * (기관별) 지표별 표준점수, 지표별 순위, 합산 점수, 합산 순위(전체 기관) 각 지표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, 합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
- ☐ 특별민원 보고서 제출(9월) 및 만족도 조사 시행(10월)
- ☐ '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시행(11월)

2 '26년도 평가지표 세부 내용

1. 평가지표 구성

구분	지표(세부지표) 및 배점	
① 취업성과 (65점)	① 취업실적 (30점)	· 취업률 ($\frac{\text{취업자 수}}{\text{종료자 수}}$)
		· 취업자 수
	② 알선취업 (25점)	· 알선취업률 ($\frac{\text{알선취업자 수}}{\text{종료자 수}}$)
		· 알선취업자 수
	③ 조기취업 (10점)	· 조기취업률 ($\frac{\text{조기취업자 수}}{\text{종료자 수}}$)
		· 조기취업자 수
② 일자리 질 개선 (25점)	④ 취업처 임금 수준(10점) ($\frac{\text{최저임금 120\% 이상 일자리 취업자 수}}{\text{종료자 수}}$)	
	⑤ 고용유지 수준(15점) ($\frac{\text{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 수}}{\text{종료자 수}}$)	
③ 참여자 만족도 (10점)	⑥ 참여자 만족도(10점)	
④ 가점	⑦ 취업지원·협업지원 우수사례 발굴(1건당 0.5~2점)	
	⑧ 일경험 등 타 사업 연계실적*	

* 일경험 등 타 사업 연계 건수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

2. 성과지표 세부사항

① 취업성과(65점)

① 취업실적 30점

- (평가 취지) 취업자 수를 통해 취업지원 성과 측정
- (평가 범위) '25.11.1 ~ '26.10.31. 종료자 중 취업자
 - * 취업자가 특화지원대상 및 중장년인 경우 취업자수를 1.5배로 산정

〈 '26년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에서의 종료자 기준 〉

- 종료자 수: '25.11.1.~'26.10.31. 기간 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
- 동일 법인 기관에서 이관받은 참여자 중 종료자는 평가대상에 포함, 타 법인 기관에서 이관받은 참여자 중 종료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 - * 사후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이관도 일반 이관과 동일하게 평가대상에서 일괄 제외
 - 컨소시엄기관은 각 구성기관의 종료자 수를 합산하여 평가
 - 취업지원서비스 연장 사유 및 연장 절차(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참조) 준수 여부는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

- (취업 기준)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(해외취업자는 포함·인력공급업체 파견대상 근로자 등은 제외)

〈 '26년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에서의 취업 기준 〉

【취·창업 기준】

- 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(매뉴얼 참조)
- ②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해외취업자
 - *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(한국산업인력공단)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영

【취·창업 제외 대상】

- ① (취업인센티브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) 인력공급업체*에 파견대상 근로자로 취업했거나 민간위탁기관 자체채용*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
 - * 고용보험전산망상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장의 업종이 인력공급업((75121)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, (75122)상용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서비스업)인 업체
 - ** 당해 민간위탁기관, 당해 민간위탁기관 대표자가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, 당해 민간위탁기관 대표자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이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, 당해 민간위탁기관 또는 대표자,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체
 - 단, 인력공급업체 본사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는 취업자로 인정
- ② (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) 아직 전 직장이 최후 이직한 직장이며, 이직 당시 근무했던 직장(동일 기업(사업)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)으로 이직 6개월 이내 재취업시

* 취·창업 및 취·창업 제외 대상 기준은 지표정의서 확정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음

- (평가 방법) ①취업률[$(\frac{\text{취업자 수}}{\text{종료자 수}})$] 및 ②취업자 수를 각각 30점 배점으로 ㉔표준점수 환산 후 ㉕가중평균하여 최종 점수 도출
 < '26년 성과지표 평가 방법 해설 >

※ 평가 방법이 다소 복잡하나, 이는 평가의 의의 및 평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므로 취업률·취업자 수 등 성과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.

㉔. 표준점수 환산 방법

□ 표준점수 환산 공식: $[(\text{배점의 } 5\% \times (\frac{\text{특점} - \text{평균점수}}{\text{표준편차}})) + \text{배점의 } 50\%]$

- * (표준점수 환산 취지) 지표별 중요도 차이에 따라 배점규모(ex. 취업실적 30점, 조기취업 10점)를 달리하고 있으므로, 배점이 평가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득점을 표준화하여 상대평가
- ** 표준편차 및 평균점수에 따라 배점을 초과하거나 0점 미만의 점수가 산출될 수 있으며 이때는 만점 또는 0점 처리

< 표준점수 환산 예시 >

- '26년 A 기관의 취업자 수는 200명, '26년 전체 민간위탁기관 평균 취업자 수는 150명, '26년 전체 민간위탁기관 취업자 수 표준편차는 10명인 경우
 → (배점) 30점, (득점) 200, (평균점수) 150, (표준편차) 10
- 환산 공식 적용: $((30 \times 5\%) \times (\frac{200 - 150}{10})) + (30 \times 50\%) = 22.5$
 → A 기관의 '25년 ①취업자 수 표준점수는 22.5점

㉕. 가중평균 및 최종 점수 도출

□ 규모지표의 의미

- 취업자 수가 많은 기관이 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세부지표 측정 시 비율지표(ex. 취업률)와 규모지표(ex. 취업자 수)를 함께 사용
- * 10명 중 5명을 취업시킨 기관보다 100명 중 50명을 취업시킨 기관이 유리하도록 구성

□ 가중평균 계산방법

- 컨소시엄 여부에 따라 규모지표(취업자 수) 점수 적용 비율 차등
- * (단독기관) 비율지표(취업률) 비율 80%, 규모지표(취업자 수) 비율 20%
 (단, 규모지표 비율 20% 적용 시 최종 점수가 10% 적용 시의 최종 점수보다 낮은 경우 10% 적용)
 (컨소시엄) 비율지표(취업률) 비율 90%, 규모지표(취업자 수) 비율 10%

< 최종 점수 도출 예시 >

- '26년 단독기관인 A 기관의 ①취업률 표준점수는 25점, ②취업자 수 표준점수는 22.5점인 경우
 - $(25 \times 80\%) + (22.5 \times 20\%) = 24.5$ 점
 → A 기관의 '26년 취업실적 최종점수는 24.5점

② 알선취업실적 25점

- (평가 취지) 참여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을 지원하였는지 평가
- (평가 범위) '25.11.1 ~ '26.10.31. 종료자 중 알선취업자
 * 종료자 기준은 '① 취업실적' 종료자 기준과 동일
- (알선취업 기준) 워크넷 구인등록 일자리 및 외부구인 알선 여부
 * 취업시점에서 워크넷에 1년간 등록되지 않은 일자리 발굴·구인등록시 우대(1.5배)
- (평가 방법) ①알선취업률[$(\frac{\text{알선취업자 수}}{\text{종료자 수}})$] 및 ②알선취업자 수를 각각 25점 배점으로 ㉔표준점수 환산 후 ㉕가중평균
 * ㉔표준점수 환산 방법 및 ㉕가중평균 방법은 '① 취업실적' 종료자 기준과 동일

③ 조기취업실적 10점

- (평가 취지) 취업역량이 있는 사람이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지 평가
- (평가 범위) '25.11.1 ~ '26.10.31. 종료자 중 조기취업자
 * 종료자 기준은 '① 취업실적' 종료자 기준과 동일
- (조기취업 기준) IAP 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 여부
 * 취업자가 특화지원대상 및 중장년인 경우 1.5배 가점 부여
- (평가 방법) ①조기취업률[$(\frac{\text{조기취업자 수}}{\text{종료자 수}})$] 및 ②조기취업자 수를 각각 10점 배점으로 ㉔표준점수 환산 후 ㉕가중평균
 * ㉔표준점수 환산 방법 및 ㉕가중평균 방법은 '① 취업실적' 종료자 기준과 동일

② 일자리 질 개선(25점)

④ 취업처 임금 수준 10점

- (평가 취지)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지 평가
- (평가 범위) '25.11.1 ~ '26.10.31. 종료자 중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 취업자
 * 종료자 기준은 '① 취업실적' 종료자 기준과 동일

- (임금수준 기준) 연도별 최저임금의 120% 이상 일자리 취업 여부

- * '25년도 취업자: 247만 원(최저임금 206만 원),
'26년도 취업자: 250만 원(최저임금 209만 원)(만 원 단위로 적용)

- (평가 방법) 임금수준 높은 취업자 비중[$(\frac{\text{최저임금 120\% 이상 일자리 취업자 수}}{\text{종료자 수}})$]을 권역별로 표준점수 환산

〈 권역별 표준점수 환산 방법 〉

□ 권역별 표준점수 환산 공식: $[(\text{배점의 } 5\% \times (\frac{\text{득점} - \text{권역별 평균점수}}{\text{권역별 표준편차}})) + \text{배점의 } 50\%]$

- * 권역별(8개 대표(지)청)로 구분하여 권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표준점수로 환산
↳ 서울, 중부(인천), 경기, 강원, 대구(경북), 부산(경남, 울산), 광주(전라, 제주), 대전(충청, 세종)
- ** 표준편차 및 평균점수에 따라 배점을 초과하거나 0점 미만의 점수가 산출될 수 있으며 이때는 만점 또는 0점 처리

〈 권역별 표준점수 환산 예시 〉

- '26년 부산청 관할 내 B기관의 '최저임금 120% 이상 일자리 취업자' 비중이 0.1(종료자 200명 중 20명)이고,
- '26년 부산청 관할 내 민간위탁기관들의 평균 '최저임금 120% 이상 일자리 취업자' 비중은 0.2이며,
- '26년 부산청 관할 내 민간위탁기관들의 '최저임금 120% 이상 일자리 취업자' 표준편차는 0.02인 경우
→ (배점) 10점, (득점) 0.1, (권역별 평균점수) 0.2, (권역별 표준편차) 0.02
- 환산 공식 적용: $((10 \times 5\%) \times (\frac{0.1 - 0.2}{0.02})) + (10 \times 50\%) = 2.5$
→ B기관의 '26년 취업처 임금 수준 최종점수는 2.5점

⑤ 고용유지 수준 15점

- (평가 취지) 더 오랜 기간 근속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지 평가

- (평가 범위) '25.11.1 ~ '26.10.31. 종료자 중 고용유지자

- (고용유지 기준) 취업 후 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까지 고용상태가 유지되었는지 여부

- (평가 방법) 고용유지자 비중[$(\frac{\text{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 수}}{\text{종료자 수}})$]을 표준점수 환산

- * 표준점수 환산 방법은 '① 취업실적' 종료자 기준과 동일

③ 참여자 만족도

⑥ 참여자 만족도 10점

- (평가 취지)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

- (평가 방법) 기관별 참여자 규모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, URL 방식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

- * '26년에도 특별민원 제기 참여자는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관서는 '26.9.15.까지 특별민원 보고서(별도 서식 안내 예정) 2회 이상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공문으로 접수한 참여자 명단 및 특별민원 보고서를 본부 제출

** 각 기관별 설문 결과의 상위 80% 평균점수 적용 예정

- (조사 방식) 조사방법, 조사규모, 조사대상, 조사인원 비율(취업자와 미취업자 혼합), 평가문항 등은 '26.9월 말 확정

- * 고용센터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와 함께 실시 예정이며, 전체 문항 중 각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조사결과만 평가에 반영할 계획

④ 가점

⑦ 가점

- (평가 취지) ① 취업성과의 질적 측면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소속 상담사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수준을 평가하고,
②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경험 등 타 사업 연계 건수를 평가 대상에 추가

- (평가 방법) ① 소속 상담사가 '26년 우수사례 공모전'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경우, 훈격별 가점* 부여

- * 대상 2점, 최우수상 1점, 우수상 0.7점, 장려상 0.5점

- ** 공모전이 11월 이후 개최되더라도 평가에 반영하고, 상담사 소속이 변경된 경우 사례 대상자가 참여한 기관에 가점 부여

② 기관별 일경험 등 타 사업 연계 건수에 따라 가점* 차등 부여

- * 가점 부여 대상 타 사업 목록은 평가계획 설명회('26.3월) 중 확정 예정

- (가점)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**일경험 등 타 사업 연계 실적**을 추가 가점 사항으로 반영

'25년		'26년	
가점	·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 수상한 경우 0.5~2점	가점	·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 수상한 경우 0.5~2점 · 타 사업 연계 실적에 따라 차등 부여